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4월 ○일 09:25분경 서울시 소재 학교 기숙사도장공사현장에서 기숙사지상5층정면부외벽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달비계용 섬유로우프를 옥상 청소용 고리와 조형물 기둥에 결속하고 달비계를 타고 작업하던 중, 결속부로부터 섬유로우프가 풀리면서 피재자가 추락하여 (13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달비계로프 체결 불량
- 나. 달비계로프 점검 미 실시
- 다. 구명줄 미 설치 및 안전대 미 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달비계 로프 체결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섬유로우프가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묶고 클립으로 체결

나. 달비계 로프 점검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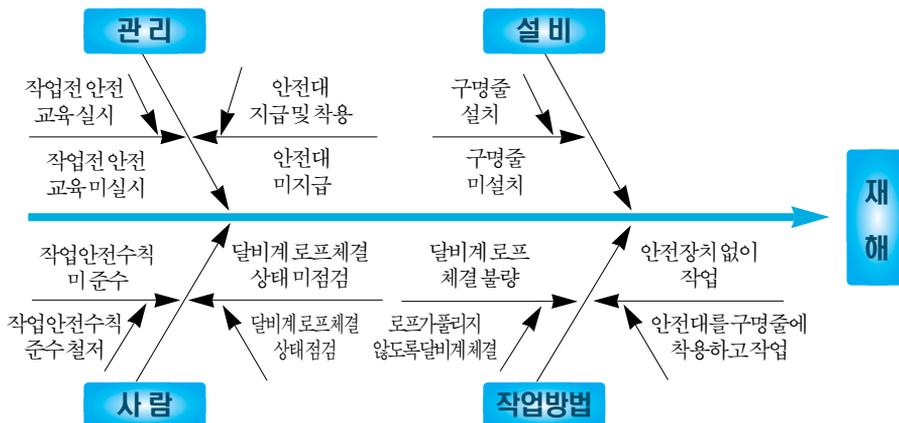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 로프 체결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다.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달비계 로프외에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구명줄에 착용하고 작업

5. 법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추락사고Ⅱ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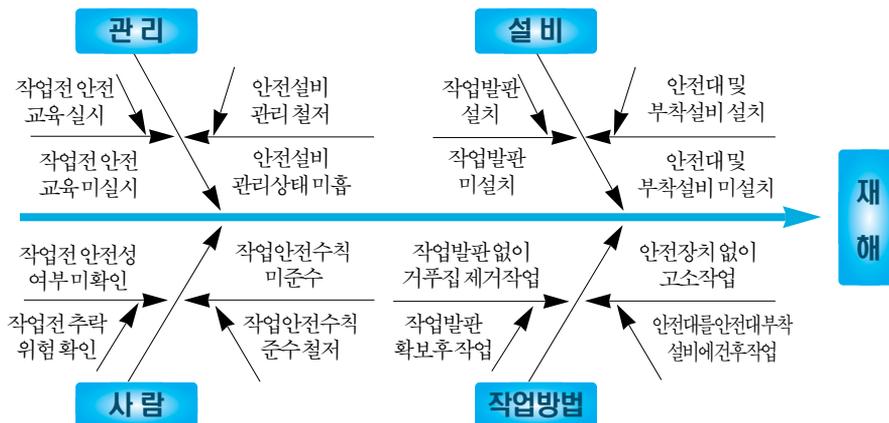
2004년 5월 ○일 12:00분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회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3명이 지상 3층 예배실(지상 2,3층) 벽체 거푸집 해체 작업 중에 피재자가 예배실 내부 쌍줄비계 띠장(5단) 위에서 작업발판 없이 거푸집된 제거 작업중 추락하여 (3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작업발판 미설치
- 나. 안전대 미착용
- 다. 안전교육 미 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설치 철저

높이가 2m 이상인 외부 비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시 하중(근로자의 체중 및 자재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폭 40cm 이상, 발판사이 틈 3cm 이하로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함.

나. 안전대 착용 철저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항상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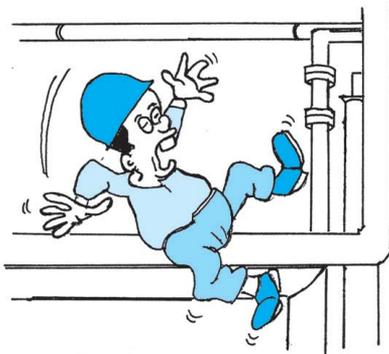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성과 작업요령을 주지시켜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함.

5. 법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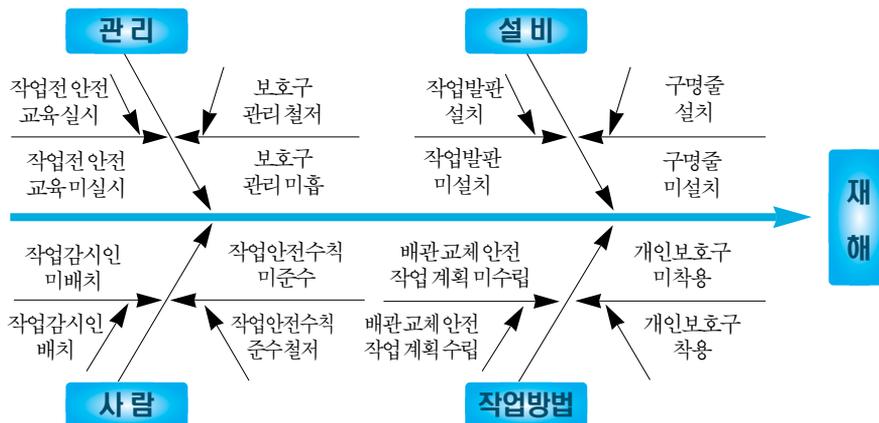
2004년 6월 0일 22:39분경 인천시 소재 ○○ Line교
체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기존 노후된 배관 파이프 6
개, 직경 150~200mm의 연결작업을 위해 파이프라인
을 밟고 배관 연결부 플랜지(Flange)의 조임 작업을 하
던 중 배관파이프 상부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4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작업발판 미설치
- 나. 개인보호구 미착용
- 다. 안전교육 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나.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성과 작업요령을 주지시켜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함.

5. 법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업 작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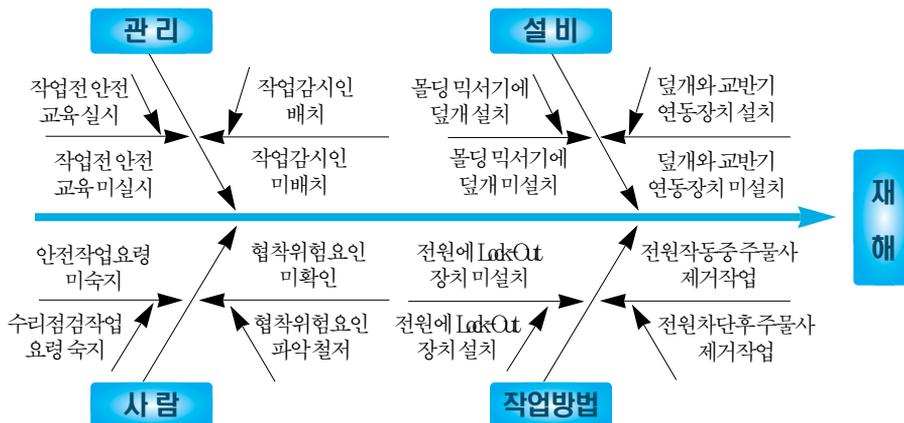
경기도소재 주물공장에서 주물사를 재활용하기 위해 몰딩믹서기에 주물사, 물, 흑연분 등을 투입하고 몰딩믹서기의 전원을 투입하였으나, 교반기가 작동되지 않아 믹서기 내부에 들어가 교반기와 벽면에 붙어 있는 주물사를 제거하던 중 교반기가 회전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주물사 제거작업시 전원 미차단
- 나. 몰딩믹서기에 덮개 미설치
- 다. 덮개와 교반기의 연동장치 미설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주물사 제거작업시 운전 정지
몰딩믹서기 내부로 들어가 주물사 제거작업시 믹서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의 재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Key Switch의 Key를 뽑아 소지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나. 덮개 설치

내부에 교반기가 있어 협착의 위험이 있는 몰딩믹서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협착위험 방지

다. 덮개와 교반기의 안전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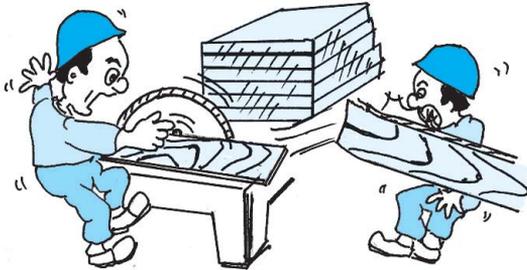
주물사 제거 작업 등을 위해 믹서기 내부로 들어갈 경우 덮개와 교반기의 전원을 연동하여 교반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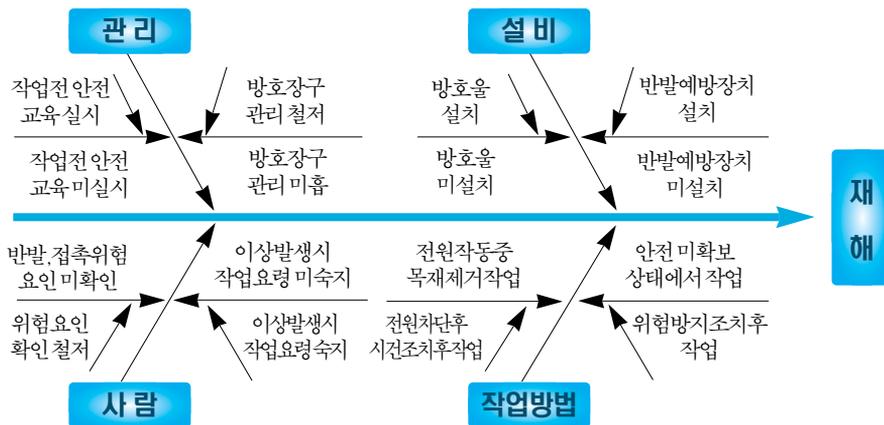
전북 군산시 성산면 소재 ○○목재 제재공장에서 목재판재가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걸려 배출구 쪽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않자 피재자가 걸려있는 판재를 강제로 잡아당겨 제거하던 중 반발하는 목재판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기계설비의 수리 · 이상발생시 조치 미흡
- 나. 위험장소 접근방지조치 미흡
- 다. 이상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 미흡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기계설비의 수리 · 이상발생시 조치요령 준수
 기계설비를 수리 · 점검, 이상발생시 조치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수리 중 표지판을 부착한 후 기계설비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

나. 위험장소 접근방지조치
 가공중인 목재가 반발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방호울과 같은 접근방지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기계설비의 수리 · 점검 및 이상발생시 조치요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 위험성 및 사고사례, 안전작업절차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감 전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대구시 소재 ○○(주)의 염료배합실에서 염료통에 물을 채우고 휴대용 전동드릴의 끝에 교반날개를 부착한 교반기로 세척작업을 위하여 전원스위치를 넣는 순간, 절연이 손상된 상태에 있던 교반기의 외함에 누전된 전기가 피재자의 오른손을 통해 감전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요인

- 가. 절연이 파괴된 교반기 사용
-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 다. 이중절연기계·기구미사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관리
6개월에 1회 이상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수리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함.

나. 누전차단기의 접속·사용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V 이상인 이동식 전기설비의 전원개폐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사용하여야함.

다. 이중절연 기계·기구 사용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작은 이동 등으로 절연파손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중절연구조를 가진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